

II. 強化된 少額株主權의 内容 및 影響

1. 論議 背景

- 기업 지배구조 개선 및 경영 투명성 제고의 일환으로 주주대표소송권을 강화하였고, 주주집단소송제도가 2000년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있어 관련 내용과 기업의 대응 방안을 살펴보자 함

2. 少額株主權의 強化 内容 및 效果

(1) 株主代表訴訟權

- (意味) 주주대표소송권이란 일정 지분 이상의 주식을 가진 소액주주들이 경영권 남용으로 회사의 이익을 해친 경영진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장치임
- (效果) 이사회와의 책임과 권한이 대폭 강화되어 책임경영이 이루어지고, 주주 이익을 중시하는 경영 관행이 정착해 나갈 것으로 예상되지만, 기업 경영의 자율성과 효율성에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될 수 있음

(2) 株主集團訴訟制度

- (意味) 주주집단소송제도는 한 소액주주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서 승소하는 경우, 공동된 피해를 입은 주주 전부에게 별도의 소송절차 없이 동등한 보상이 돌아가는 제도임
- (問題點) 주주집단소송이 남소되거나 불순한 목적에 악용될 가능성이 매우 크며, 도입시기가 너무 빠르다는 문제점이 있음
- (補完課題) 불순한 목적에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주주집단소송의 허가 신청이 제기되는 경우 상대방 기업에게 허가 심리과정에서 제소당사자의 악의를 소명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되어야 함
 - 또한 엄격한 허가 기준이 적용되어야 하며, 피해보상 신청액에 비례한 소송비용의 책정 등 남소를 막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함

3. 企業의 對應 方案

- 기업은 개별 기업 단위의 책임경영 강화, 수익성 경영 지향, 고배당 정책으로 전환, 소액주주와의 지속적인 대화 채널 유지 등의 정책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아울러 이사회 운영 활성화, 이사회 기록 보전, 이사 및 감사의 배상책임 보험 가입, 외부 전문가의 의견 활용 등도 이루어져야 할 것임

1. 論議 背景

주주대표소송권의 강화와 주주집단소송제도의 도입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음

- '98년 4월중 주주대표소송권이 개정 시행되었고, 주주집단소송제도가 2000년부터 도입될 예정임
 - 이는 과거에 비해 소액주주의 권리가 강화되는 것을 의미함
 - 기업 지배구조 등을 포함 그동안의 기업 경영 관행에 상당한 변화를 요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따라서 논의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고 문제점을 파악함으로써 강화된 소액주주에 대한 기업의 대응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2. 少額株主權의 強化 内容 및 效果

(1) 株主代表訴訟權

○ 内容

주주대표소송권이란 소액주주들이 경영권 남용으로 회사의 이익을 해친 경영진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장치임

- 주주대표소송권이란 일정 지분 이상의 주식을 가진 소액주주들이 경영권 남용으로 회사의 이익을 해친 경영진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장치임
- 개정 증권거래법은 소액주주의 대표소송 자주 요건을 크게 완화하였음
 - 1998년 4월 1일부터 발효된 개정 증권거래법은 상장회사에 대한 주주대표소송의 경우 종래의 1%에서 0.05%로, 6월에 다시 0.05%에서 0.01%로 낮춤
 - 다만 소액주주권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상장 회사의 경우 주식을 6개월 전부터 계속 보유한 사람에 한해 권리 행사가 가능하도록 제한함

<표 1> 改定 證券去來法 中 少額株主權 行使 要件 緩和 部門

소액주주권 종류	행사 요건	
	현행	개정
· 대표소송권	1%(0.5%), 6개월	0.01%, 6개월
· 이사 · 감사해임청구권	1%(0.5%), 6개월	0.5%(0.25%), 6개월
· 위법행위유지청구권	1%(0.5%), 6개월	0.5%(0.25%), 6개월
· 청산인해임청구권	3%(1.5%), 1년	0.5%(0.25%), 6개월
· 주주제안권	1%(0.5%), 6개월	현행 유지
· 회계장부열람권	3%(1.5%), 1년	1%(0.5%), 6개월
· 업무검사청구권	3%(1.5%), 1년	3%(1.5%), 6개월
· 주총소집요구권	3%(1.5%), 1년	3%(1.5%), 6개월

주: 1. 팔호 안은 자본금 1천억 원 이상인 상장법인의 경우

2. 기타 소액주주의 입증 책임 조항 삭제

○ 效果

이사회의 책임
과 권한이 강화
되어 책임경영
이 자리잡을 것
으로 기대됨

- (肯定的 效果) 이사회의 책임과 권한이 대폭 강화되어 책임경영이 자리잡을 것으로 기대됨
 - 경영진의 독단적인 경영권 남용을 견제함으로써 주주 이익을 중시하는 경영 관행이 정착될 것으로 보임
 - 관치 금융의 폐해를 방지하면서, 금융기관의 자율적인 여신심사능력을 강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차입 경영 관행을 원천 봉쇄함으로써 계열사별 내부 거래를 방지하고 부실 계열사로 인한 모기업의 부실화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음
 - 이러한 선진적인 경영 관행의 정착으로 현재 진행 중인 기업 구조조정의 가속화도 기대할 수 있음

기업 경영의 자
율성과 효율성
에 문제가 생길
수 있음

- (否定的 效果) 기업 경영의 자율성과 효율성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될 수 있음
 - 소액주주들이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주주대표소송권을 남용할 가능성이 있음
 - 긴급한 상황에서도 모든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야 하므로 의사결정 기간이 길어질 가능성이 있음

- 단기 업적을 중시하는 주주들로 인해 장기적인 안목에서의 투자가 위축될 수 있으며, 대규모의 투자가 요구되는 사업의 진행이 어려워질 수 있음
- 소액주주와 기존 경영진의 충돌은 주식 시장에도 영향을 미쳐 주가 하락을 가져올 수 있음

(2) 株主集團訴訟制度

○ 意味

주주집단소송제도는 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데 목적이 있음

소송주체는 1주 이상의 주식을 가진 소수주주이며 허위기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임

- 주주집단소송제도는 한 소액주주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서 승소하는 경우, 공통된 피해를 입은 주주 전부에게 별도의 소송절차 없이 동등한 보상이 돌아가는 제도임
- 이는 소액주주가 회사 경영진을 상대로 주주집단소송을 제기해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데 목적이 있음
- 2000년부터 시행 예정인 주주집단소송제도는 증권거래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피해구제를 위해 일반법하의 집단소송제도 도입에 앞서 증시부문에 우선적으로 실시하고자 하는 것임
- 주주집단소송제도의 試案을 보면, 주주집단소송의 주체는 1株 이상의 주식을 가진 소수주주로 증권거래법에 열거된 손해배상의 특칙 중 집단적 성격의 분쟁이 뚜렷한 허위기재로 제한함
- 즉 유가증권신고서, 공개매수신고서, 사업보고서 등의 허위기재에 대해 손해배상을 제기해 모든 주주가 보유주식 수에 상응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음
- 피해자를 대표하여 소송을 제기한다는 점에서는 주주 대표소송과 유사하다 할 수 있으나 주주대표소송이 주주가 회사를 대신하여 이사를 상대로 회사에 손해를 배상할 것을 청구하는 소송인데 반해, 주주집단소송은 피해자가 자신에게 손해를 배상하라는 소송임

○ 集團訴訟에 대한 外國의 制度

미국의 대표당
사자소송은 개
인주도형 집단
분쟁 해결방식
임

독일의 단체소
송은 단체주도
형 집단분쟁 해
결방식임

일본은 주주집
단소송제도를
채택하지 않고
있음

- (美國) 미국의 대표당사자소송(class action)은 개인주도형 집단분쟁 해결방식임
 - 공통의 원인관계를 갖는 다수인의 집단 중에서 1인 또는 數人이 집단의 대표로서 소송을 수행함
 - 판결의 효력은 집단에 속한 전원에게 미침

- (獨逸) 독일의 단체소송(Verbandsklage)은 단체주도형 집단분쟁 해결방식임
 - 피해집단과 관련있는 단체에게 제소자격을 인정하여 구성원이나 공공의 이익을 위해 소송을 수행하도록 하는 소송형태임
 - 독일의 단체소송은 유지청구소송(중지청구소송)을 중심으로하고 있으며 아직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집단적 구제제도가 확립되어 있지 않음

- (日本) 일본은 주주집단소송제도를 채택하지 않고 있음
 - 피해방지를 위한 사전차단장치를 광범위하게 마련함으로써 집단소송제도를 대신하고 있음
 - 아울러 단독주주제소권을 시행함으로써 단 1주의 주식만으로도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표 2> 國別 集團訴訟制度 比較

	미국	독일
활용 여부	적극 활용	부분적 활용
소송 주도	개인	단체
대표선출 행위의 필요성	필요없음	필수 사항은 아님
소송 대표자	공통의 이해관계인	피해 집단과 관련 단체
판결의 효력 범위	공통	단체구성원

○ 問題點

주주집단소송이
남소되거나 불
순한 목적에 악
용될 가능성이
매우 큼

- 주주집단소송이 남소되거나 불순한 목적에 악용될 가능성이 매우 큼
- 주주집단소송의 허용 범위를 유가증권신고서, 공개매수신고서, 및 사업보고서(반기보고서 포함) 등 세 가지 서류의 허위기재인 경우로 제한하고 있음
- 그러나 이는 기업과 모든 문제에서 연관되므로 남소되거나 악용될 소지가 많음
- 주주대표소송의 경우 승소금이 기업에게 지불되고 제소자에게는 금전적 이득이 없지만, 주주집단소송의 경우 승소금이 제소자 및 주주 전체 집단에게 배분되어 돌아간다는 점에서 남소의 여지가 매우 큼

주주집단소송의
도입시기가 너
무 성급함

- 주주집단소송의 도입시기가 너무 성급함
- 현재 민사소송법의 하나로 추진 중에 있는 주주집단소송법(案)이 향후 입안되거나 시행후 문제점이 보완되고 난 후 주주집단소송제를 도입하는 것이 성급한 도입으로 파생되는 문제점을 최소화할 수 있음

<표 3> 株主集團訴訟制度와 株主代表訴訟制度의 比較

	주주집단소송제도	주주대표소송제도
소송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가증권신고서 허위기재 - 공개매수신고서 허위기재 - 사업보고서 허위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액주주에게 피해가 되는 제반 사항
소송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사 및 감사를 포함한 경영 책임자 - 회계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사 및 감사를 포함한 경영 책임자
소 제기권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해자 20명 이상의 대표 당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행주식 0.01%의 소액주주 - 6개월 이상의 보유기간
승소금 분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유주식 수에 따른 안분비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

○ 補完課題

주주집단소송이
불순한 목적에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
적 보완이 필요
함

- 주주집단소송이 불순한 목적에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함
 - 상법상 주주대표소송의 경우 제소하는 주주가 악의임을 회사가 소명하면 악의의 주주에 대하여 상당한 담보를 제공할 것을 명하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으나, 주주집단소송법에는 이에 해당하는 조문이 없음
 - 이는 주주집단소송의 경우 대표당사자나 단체가 마음대로 소를 제기할 수 없고, 법원이 이를 허용한 경우에만 제소가 가능하고, 이 허가 과정에서 악의로 주주집단소송을 제기하려는 제소자의 기도가 억제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임
 - 따라서 주주집단소송의 허가 신청이 제기되는 경우 상대방 기업에게 허가 심리과정에서 제소당사자의 악의를 소명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되어야 함

주주집단소송의
남소를 막기 위
한 제도적 보완
이 필요함

- 주주집단소송의 남소를 막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함
 - 엄격한 허가 기준이 적용되어야 하며, 피해보상 신청액에 비례한 소송비용의 책정이 필요함
 - 손해배상액의 산정기준, 향후 전망표시에 관한 일정한 면책, 회계감사인에 대한 위법 부당행위의 적발 · 공시 의무 부과 등을 보완할 필요가 있음

3. 企業의 對應 方案

내부거래에 대
한 외부주주의
경영간섭 및 견
제가 증가할 것
으로 예상됨

- 소수주주권의 강화로 인해 대기업 체제에서 관행으로 용인된 내부거래에 대한 외부주주의 경영 간섭 및 견제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이에 따라 개별 기업 단위의 책임경영을 확립할 수 있는 기반을 시급히 마련해야 함

고배당 정책으로의 전환 및 주가 관리의 노력이 요구됨

- 기업의 목표를 주주이익의 극대화에 두고 고배당을 통한 고주가를 실현할 수 있도록 배당정책의 전환 및 주가관리의 노력이 요구됨
 - 미국의 배당수익률(주당 배당액/주식시가)이 공금리의 40~70%인데 반해 한국은 10~20%으로 선진국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임
 - 외국 투자자들은 향후 실적배당 및 시가배당으로 기업 배당 정책의 전환을 요구할 것으로 보임
- 우호적이고 안정적인 주주 확보가 필요함
 - CEO 등 경영진은 주주에 대한 IR(Investor Relations) 활동을 적극적으로 강화하여, 대화 채널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면서, 회계 정보를 ‘투명하게’ 공시함으로써 우호적이면서 안정적인 주주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함

이사회의 운영을 활성화하여 기업 지배구조의 내부 규율 기능을 강화해야 함

- 이사회의 운영을 활성화하여 기업 지배구조의 내부 규율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향후 사외이사가 전체 이사회에서 차지하는 구성 비율이 점차 확대될 전망이므로 小위원회의 구성 등을 통해 주주의 이익을 대변하고 제고할 수 있도록 이사회를 최대한 활용해야 함
- 법정소송에 대비하여 책임이 없음을 증빙할 수 있는 기록의 보전이 필요함
 - 이사는 중요한 결정을 위한 이사회에서 자신의 출결상황과 찬반에 대해 의사록과 기타 중요 문서에 주의를 기울여야 함

임원배상 책임 보험을 적극 활용해야 할 것임

- 이사 및 감사는 임원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할 것임
 - 임원배상 책임보험란, 회사가 상법상 임원을 피보험자로 하여 법정소송에서 이사 또는 감사가 패소할 경우 지불해야 할 손해배상금 및 방어소송비용에 대해 가입하는 보험을 말함

이사는 경영 판단의 원칙에 따라 의사 결정을 하여야 함

- 이사가 통상적으로 수행한 프로젝트의 실패로 책임을 추궁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경영 판단의 원칙(Business Judgment Rule)¹⁾에 따라 의사 결정을 하여야 함
- 제3자나 이해관계가 없는 전문 컨설팅 업체 및 기관을 통해 통상적인 노력으로 입수한 정보와 조사(둘다 문서화된 것)에 의거하거나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구한 후 내려진 판단인 경우, 이사는 실패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있음

충실한 사내 법무진을 보유하고 외부 전문가인 고문 변호사를 적절히 활용함

- 충실한 사내 법무진을 보유하고 외부 전문가인 고문 변호사를 적절히 활용하는 역량을 갖춰야 함
- 미국의 경우 법무비용(legal cost)이 GNP의 3%로 추산되고 있으며 일본은 기업의 절대비가 GNP의 1.3%에 이르는 수준임
- 이사회 및 경영진의 주요 결정에 대해 사내 법무진과 고문 변호사의 자문을 통해 적법하고 여타 주주의 이익이 손상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함

(백홍기: hkback@hri.co.kr ☎724-4099)
(김정훈: jhkim1@hri.co.kr ☎724-4093)

1) 경영 판단의 원칙이란, 이사가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않고(disinterested), 독립적이며 (independent) 의사결정이 충분한 정보(informed)에 의한 경우, 비록 그 결정으로 사후 회사에게 손실을 입히더라도 법정은 이사회의 결정을 존중하여야 하며, 이사회는 원칙적으로 그 결정에 의한 책임추궁을 받지 않는다는 원칙을 지칭함(<附錄> 참조)

<附錄> 理事의 經營 責任에 대한 判斷 基準

- 營利性
 - 우리 상법은 이사를 회사 업무에 대한 受任人에 준하는 지위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사는 委任의 本旨에 따라 善管注意義務(善良한 管理者の 注意義務)를 지게 됨
 - 위임의 본지는 위임 관계의 성질에 따라 상이하나 회사에 있어 가장 최우선하는 위임의 본지는 영리성임
 - 따라서 이사의 모든 행동은 회사의 영리 실현에 연결되느냐에 의해 정당성 유무가 판단되는 것이고, 이사의 책임에 대한 모든 판단은 이 영리성에 기초하여 이루어져야 함
- 經營 判斷의 法則
 - 경영자의 업무 집행 행위의 적법성은 행위 당시에 판단되지만, 그 행위의 타당성이나 효율성은 사후적으로 판단되는 경우가 많음
 - 경영 판단의 법칙이란 이사의 업무 집행 행위의 결과를 가지고 사후적으로 책임을 묻지는 않느다는 것으로 행동 시점에서 예측할 수 없었던 일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함
- 책임 판단의 독자성
 - 책임 판단의 독자성이란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의 위법·부당한 결의 사항에 대해 이사는 단순히 집행한 경우에도 이사회나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다는 사실로 인해 이사의 책임이 경감되지 않는다는 것임
 - 이사회나 주주총회의 결의와 같은 조직법적인 지시가 이사의 책임에 대한 면책 사유가 될 수 있는 만큼, 지배주주나 모회사의 지시가 있었다고 해서 이사의 책임이 경감되거나 면제될 수는 없음
- 충실의무
 - 상법 개정안은 제382조의3에 “이사의 충실의무”라는 표제 하에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하였음